

2017년 제9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인도적 지원의 적법성

(Meganus v. Ultrarica)

1. 사실관계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인구 1,500만여 명의 다민족 국가인 Meganus 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Horran 족 중심의 군부에 의한 강압적 통치가 이루어져 왔다. 이 군부 통치는 지배적 민족인 Horran 족에 매우 호의적인 반면에 나머지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반발을 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5년부터 인구 면에서 Horran 족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Kiman 족은 Horran 족 군사정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분리·독립 투쟁을 시작하였다. 300만여 명에 달하는 Kiman 족은 주로 Meganus 국의 남부 해안을 끼고 있는 Samarina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분리·독립 투쟁을 위하여 무장세력 및 그 지휘부를 두고 있었다. 2010년경에는 그 세력이 커져서 군사정부의 통치를 사실상 배제하고 스스로 Samarina 지역의 주민들에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Kiman 족 무장세력은 대외적으로 “민족해방운동단체”(People’s Liberation Movement Organization)임을 표방하고 군사정부의 독재에 반대하며 민주적인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iman 족 무장세력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Ultrarica 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은밀하게 분리·독립 투쟁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Meganus 국 군사정부는 Kiman 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하여 이를 국내 헌법 및 형법에 반하는 ‘반란’(rebellion) 범죄로 규정하고 진압을 계속하여 왔다. Meganus 국 군사정부는 Kiman 족 무장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해 왔으며 특히 Ultrarica 국에 대해서는 Kiman 족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외교관계의 단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2016년 7월 15일 초대형 태풍 사쿠라(Sakura)가 Meganus 국을 강타하고 이로 인한 쓰나미(해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300여만 명이 집을 잃거나 식량 또는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풍의 내습 및 쓰나미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은 Kiman 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Samarina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ganus 국 군사정부는 그에 대한 구호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으며 Kiman 족 무장세력 지휘부의 구호 요청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 제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태풍 및 쓰나미는 Samarina 지역만이 아니라 Meganus 국의 다른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Samarina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Horran 족을 비롯한 여타 민족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Kiman 족 무장세력 지휘부는 7월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Meganus 국 군사정부와의 공동 구호를 제의하고 Samarina 지역 내에서 군사정부가 이재민 구호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군사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하여 Samarina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Kiman 족 무장세력이 군사정부에 대한 투쟁을 끝내고 분리·독립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Kiman 족 무장세력과의 협조 및 Samarina 지역에 대한 구호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다. 나아가서 현재 Samarina 지역을 사실상 무장세력의 지휘부가 장악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책임이 Kiman 족 무장세력의 지휘부에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Meganus 국 군사정부의 태도는 Samarina 지역의 이재민들에 대한 자체의 구호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빚발치는 비난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더욱이 Meganus 국 군사정부는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보다도 자국의 영역에 국제기구 및 외국의 구호 관계자들이 들어오고 현장에서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자신의 무능력과 취약성이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더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Meganus 국 군사정부가 Kiman 족 무장세력과의 공동구호 작업도 외면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다양한 지원 제의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재난 피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5일 Kiman 족 무장세력 지휘부는 국제사회를 향하여 Meganus 국 군사정부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Samarina 지역에 대한 구호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Samarina 지역에 있던 항구는 그 시설 대부분이 태풍 및 쓰나미로 인하여 파괴된 상태여서 구호 인력의 입국 및 물품의 반입을 위해서는 Meganus 국의 수도나 타 지역의 공항 및 항구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Samarina 지역에 대한 구호 인력 및 물품의 반입을 위하여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공항 및 항구를 개방해 주도록 Meganus 국에 요청하였으나 군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당시 구호 물품을 실은 외국 선박들이 Meganus 국 및 주변국들의 연안에 정박해 있고 이를 지원할 인력도 주변국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Meganus 국 군사정부의 비협조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구호를 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희생되고 있었다. Meganus 국 전역에 걸쳐서, 특히 Samarina 지역에서 질병이나 부상의 악화로 인한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나아가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자들도 속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대하여 협조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Meganus 국 군사정부에 대한 비난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를 비롯한 민간 국제기구들은 자체의 정보력을 동원하여 Samarina 지역을 포함한 Meganus 국의 재난피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UN으로 하여금 Meganus 국 군사정부의 동의 및 협조 여하에 관계없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구호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UN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재난 직후 식량을 필요로 하는 이재민들 중 겨우 10%만이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UN 인도적 지원 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지체될 경우 수인성 전염병이 창

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8월에 접어들어서는 콜레라 발병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였으며 일주일 만에 그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점차 고조되고 Samarina 지역은 물론 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8월 3일 Meganus 국 군사정부는 마지못해 국제적 구호 지원 제안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Meganus 국 군사정부는 여러 국제기구나 국가들이 제공한 구호 인력과 구호 물품이 Samarina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였다. 구호 인력에 대해서는 입국사증(Visa) 신청서에 구호 지역에 대하여 기입하도록 한 다음 Samarina 지역을 기입한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였고 구호 물품도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한하여 반입 및 배분을 허용하였다. 게다가 Meganus 국 군사정부는 Ultrarica 국의 구호 인력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입국이나 반입을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결과 가장 절실히 구호를 필요로 하던 Samarina 지역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Meganus 국 군사정부의 비협조 내지 방해 속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Kiman 족이 ‘절멸’(extermination)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Kiman 족 무장세력 지휘부는 8월 9일 직접 Ultrarica 국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주도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다음 날 8월 10일 Ultrarica 국은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여 Samarina 지역을 포함한 Meganus 국의 재난 상황 및 구호 문제에 대한 UN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안보리에서 Ultrarica 국을 포함한 3개 상임이사국들과 대다수의 비상임이사국들은 Meganus 국 군사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난하면서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Fassan 국은 Meganus 국 군사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2005년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세계정상회의결과물」(World Summit Outcome)이 채택된 이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태에 대해서는 일응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이하 “RtoP”)이 발동되기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이번 Meganus 국의 책임 회피는 ‘미필적 고의’에 기인한 것으로 Kiman 족의 ‘절멸’까지도 우려되는 만큼 군사정부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도 RtoP가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무력적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하여 Meganus 국 군사정부는 이러한 안보리의 논의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전통적으로 Meganus 국과 우호관계를 맺어 온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즉 Chakis 국과 Russco 국의 반대로 UN 차원의 RtoP 발동이나 무력적 개입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채 다시 일주일이 흘렀다. 이재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커져가기만 했고 많은 국가들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8월 20일 Ultrarica 국은 안보리를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미 인근 연안에 정박하고 있던 구호 선박들은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어 선박 접근이 가능한 Samarina 지역의 해안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Meganus 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그 해군 함정들로 하여금 구호 선박들이 Samarina 해안에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리 파견되어 있던 Ultrarica 국 군함의 호위를 받아 구호 선박들은 무사히 해안에 접근하게 되었고 상당수 구호 인력과 구호 물품들이 Samarina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Ultrarica 국 및 주변국들의 긴급 구호 및 피해 복구 지원활동에 의하여 많은 이재민들에게 식량 및 의약품이 공급되고 파괴된 주택과 도로가 복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0월에 접어들어 Samarina 지역은 급속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고 Kiman 족 무장세력의 지휘부도 Meganus 국 군사정부에 대한 투쟁의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2. Meganus 국의 제소

이에 Meganus 국 군사정부는 10월 15일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함까지 동원하여 강행된 Ultrarica 국과 주변국들의 행동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Meganus 국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illegal intervention)으로 UN 헌장 제2조 제7항의 위반에 해당

함은 물론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use of force)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Ultrarica 국에 대하여 Samarina 지역 및 Kiman 족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Ultrarica 국은 즉각 자신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 고려”(humanitarian considerations)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2017년 1월 1일 Meganus 국 군사정부는 Ultrarica 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였다. UN 회원국인 Meganus 국은 이미 자신과 Ultrarica 국이 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방적 제소절차를 밟았다.

Meganus 국은 제소신청서(Application)에서 ICJ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판결해 주도록 청구하였다.

- (1) Meganus 국의 동의 없이 자국의 영역인 Samarina 지역에 진입하여 구호 및 복구조치를 취한 Ultrarica 국의 행동은 Meganus 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UN 헌장 제2조 제7항 및 관습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국내문제불간섭 의무”(duty of non-intervention)의 위반에 해당한다.
- (2) 무기를 탑재한 군함을 동원하여 취한 Ultrarica 국의 행동은 UN 헌장 제2조 제4항 및 관습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무력사용금지 의무”(duty of non-use of force)의 위반에 해당한다.
- (3) Ultrarica 국이 Samarina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Meganus 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반란’을 시도하고 있는 Kiman 족 무장세력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4) Ultrarica 국은 (1)과 (2)와 같이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Meganus에게 국제법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제9회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문제 관련 추가 공지

1. ICJ Registrar는 규정(the Statute)과 법원규칙(Rules of the Court)의 관련 조항에 따라 Meganus 국이 제출한 제소신청서(소장) 부분을 Ultrarica 국에 송달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을 통하여 다른 UN 회원국들에게도 통지하였다.

2. 원장(the President)은 절차에 관한 양 당사국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국이 선임한 대리인들을 불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1) 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Meganus 국은 judge ad hoc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선임하지 않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Meganus 국은 provisional measures를 신청하지 않고, Ultrarica 국은 counter-claim을 제기하지 않는다.

(3) Meganus 국은 본안전 항변(preliminary objections)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

(4) Ultrarica 국은 본안전 항변(preliminary objections)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

(5) Ultrarica 국은 청구의 추가병합이나 포기가 없음을 전제로 Counter-Memorial을 “규칙”과 “공지”에 정한 변론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제출한다는 데 동의한다.

3. 위의 사항들에 유의하여 ICJ는 2017년 5월 1일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Meganus 국과 Ultrarica 국은 변론서 제출마감일까지 자국의 Memorial과 Counter-Memorial을 제출한다.

- 기타 여기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와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며, “규칙”에도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과 양립하는 한도 내에서 ICJ 규정, 법원규칙 및 법원의 관례에 따른다.

※ “규칙”은 국제법모의재판경연대회 규칙임.